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 간 투 자 시 설 사 업

실 시 협 약

2005. 3. 28.

건 설 교 통 부

(가칭) 칠곡내륙화물기지 주식회사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1

제2조 (정의) 2

제2장 기본약정

제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9

제4조 (사업시행자의 자격과 권한 및 권리) 9

제5조 (시설소유권의 귀속 등) 10

제6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0

제7조 (출자자 및 출자자분의 변경) 10

제8조 (보험가입) 11

제9조 (업무감독) 11

제10조 (보상업무) 12

제11조 (권한의 위임) 12

제12조 (협약의 성실이행) 12

제3장 총사업비의 결정및 변경

제13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등) 12

제14조 (총사업비의 변경) 13

~~제15조 (차카차본 투입)~~ 14

제4장 실시절차 및 공사에 관한 사항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 14
제17조 (사업이행보증) 15
제18조 (공사감리) 15
제19조 (공사의 도급) 16
제20조 (공사기간) 16
제21조 (공사의 착수) 17
제22조 (공정보고) 17
제23조 (위험물의 발견) 17
제24조 (지상 및 지하지장물) 18
제25조 (문화재의 발견) 18
제26조 (환경 및 안전관리) 19
제27조 (민원처리) 19
제28조 (사업이행지체) 20
제29조 (기성검사) 20
제30조 (부분준공 및 준공전 사용) 20
제31조 (정부지원시설의 적기 준공 및 운영관리) 21
제32조 (준공확인 및 시설소유권의 등기) 22

제 5 장 수 익 률 및 사 용 료

제33조 (사업수익률) 23
제34조 (사용료의 징수) 23
제35조 (사용료의 결정 및 정기적 조정) 23
제36조 (사용료의 부정기적 조정) 24

제37조 (추정물동량 및 추정사용료수입) 24

제 6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 (운영비용) 25

제39조 (기타 경미한 사업의 시행) 25

제40조 (유지관리 및 품질확보) 25

제41조 (관리 및 운영 등의 관련계약) 26

제42조 (운영실적보고) 27

제43조(입주자 선정) 27

제 7 장 정부지원

제44조 (정부의 재정지원) 27

제45조 (비 재정적 정부지원) 28

제 8 장 위험분담

제46조 (위험배분원칙) 29

제47조 (사업시행자 귀책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29

제48조 (정부 의 귀책 또는 부담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30

제49조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31

제50조 (불가항력의 발생통지 및 이의제기) 32

제51조 (불가항력 발생 시의 조치) 32

제 9 장 협약의 종료

제52조 (협약의 종료) 33

제53조 (중도해지에 따른 협약의 종료) 33

제54조 (정부에 의한 중도해지) 34
제55조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34
제56조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 34
제57조 (중도해지에 대한 이의 제기) 35
제58조 (협약의 중도해지시의 효과) 35

제 10 장 분쟁의 해결

제59조 (분쟁의 해결) 36
제60조 (중 재) 36
제61조 (합의관할) 37

제 11 장 비밀 유지 등 기타 사항

제62조 (비밀유지) 37
제63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37
제64조 (협약의 변경) 38
제65조 (협약의 수익자) 38
제66조 (일부무효) 38
제67조 (적용법규) 39
제68조 (통지) 39
제69조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정부협조) 40
제70조 (정부의 협약준수 의무) 40
제71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40
제72조 (완전합의) 41

제73조 (언어) 41

제74조 (문서의 우선순위) 41

제75조 (해석) 41

제76조 (협약의 효력) 42

제77조 (경과조치) 42

부록 1. (사업시행자 출자지분) 43

부록 2. (총사업비) 44

부록 3. (연도별 자금투입계획) 45

부록 4. (추정물동량) 46

부록 5. (사용료) 47

부록 6. (추정사용료수입) 48

부록 6-1 (직영수입) 49

부록 7. (운영비용) 50

부록 7-1. (운영비용명세서) 51

부록 8. (불변현금흐름표) 52

부록 9. (보험료) 53

부록 10. (정부지원사항 및 시설공사) 54

실 시 협 약

대한민국과 (가칭) 칠곡내륙화물기지 주식회사는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2005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① 본 실시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2004 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 등에 따라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과 (가칭) 칠곡내륙화물기지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간에 합의된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범위 및 규모는 2004 년 7 월 20 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른다.

구 분	시 설 내 역
부 지 면 적	456,482 ㎡(138,086 평)
건축 연면적	169,077.86 ㎡(51,146.05 평)
주 요 시 설	집배기능 및 보관기능 : 화물취급장,배송센터, 컨테이너 장치장,야적장 수송 및 연계기능 : 철송취급장 정 보 기 능 : 화물정보센터 지 원 기 능 : 관리편익동, 샤시장치장, CY-GATE,

		컨테이너 정비소, 주유소, 세차장, 차량관제소, 쓰레기 집하장, 변전소, 차량정비소, 오폐수 처리장, 유수지, 유수분리조
	기타시설	: 주차장, 철도, 도로, 공원, 녹지

제2조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문맥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용어는 단수 및 복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민간투자법에 정의된 용어는 민간투자법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1. 가격산출기준일 : 본 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등의 가격산출기준을 적용한 날로서 2004 년 3 월 22 일을 말한다.

2. 감리자 : 본 협약 제 18 조에 따라 선정된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3. 건설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건설이자 : 본 사업시설의 건설·제작·매입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 충당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본 협약 체결이후 본 사업 시설의 준공시까지 발생하는 지급이자 비용을 말한다.

5. 계열회사 :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 가운데 [illegible]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 조 제3 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 조의 2 제2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사기간 : 본 협약 제21 조(공사의 착수)에 의한 공사 착수일로부터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최종 준공확인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으로 27 개월을 말한다.

7. 공사도급계약 :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들간에 체결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계약을 말한다.

8. 공사착수일 : 사업시행자가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는 착공계에 기재된 공사개시일을 말한다.

9. 공식환율 : 해당일에 서울외국환중개회사가 최종 고시하는 해당 외국통화에 대한 시장평균환율을 말한다. 만약 그러한 환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을 말한다.

10. 관계기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의 부과 등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말한다.

11. 금융기관 :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을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기타 경미한 사업 : 민간투자법 제 14 조 제 4 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후 민간투자사업 이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사업으로서, 시설사용자에게 시설 이용과 관련한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13. 내륙컨테이너기지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 2 조 제 4 호에 규정된 컨테 이너 화물의 취합, 분류, 장치 또는 혼재 등을 위하여 내륙에 조성된 지역으 로 항만법에 의한 항만지역이 아닌 곳에 항만시설중 하역장비, 하역시설,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을 갖추고 관세법에 의한 보세장치장 등 통관 및 정보제공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기지를 말한다.

14. 내륙화물기지 :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말한다.

15. 담보권 : 저당권, 유치권, 질권, 기타 담보권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 또는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 또는 협정을 말한다.

16. 문화재 : 대한민국 법률 제 6840 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17. 물가변동비 : 가격산출기준일인 2004년 3월 22일부터 본 사업시설 준공시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한다.

18. 물류 : 대한민국 법률 제 6841 호 화물유통촉진법 제 2 조 제 1 호에 정의되고 있는 용어로서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 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19. 물류시설 : 대한민국 법률 제 6841 호 화물유통촉진법 제 2 조 제 5 호에 정의되고 있는 시설로서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 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 등을 말한다.

20. 물류체계 : 대한민국 법률 제 6841 호 화물유통촉진법 제 2 조 제 1 호의 2 에 정의되고 있는 용어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물류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21. 민원 :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가. 사업민원 : 본 사업의 지장물 보상, 영업손실 보상 등 본 사업의 시행으로 제3 자가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서 발생되는 민원

나. 시공민원 : 소음, 진동, 분진 등 본 사업의 시공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22. 반기 : 매 년도의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 또는 7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3. 법령 :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조약, 협약, 고시, 조례, 명령 등을 말한다.

24. 보건 및 안전규정 :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보건, 안전에 관한 법률, 규칙, 기준 등을 말한다.

25. 보조금 : 민간투자법 제 53 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하나로서 민간투자법령 및 본 협약에 따라 건설 및 시설소유기간 중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의 교부금을 말한다.

26. 복합화물터미널 : 대한민국 법률 제 6841 호 화물유통촉진법 제 2 조 제 7 호의 일부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의되고 있는 시설로서 화물의 집하·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2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말한다.

27. 본 사업 : 사업계획서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특정된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운영'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 2 조 제 8 호의 2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 2 조 제 4 호에 규정된 터미널사업, 내륙컨테이너기지 사업과 내륙화물기지 운영자로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업, 그외 부속시설사업들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8. 본 사업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 제 52 조(협약의 종료) 제 1 항에 의한 본 협약의 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9. 본 사업부지 : 실시계획에서 특정된 도면상의 본 사업시설부지 등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건설기간 중에는 필요한 임시시설물이 위치할 지역을 포함한다)로서 그 지표면과 지하 및 지상공간을 포함한다.

30. 본 사업수입 : 본 사업기간동안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부속시설 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얻는 수입을 말한다.

31. 본 사업시설 :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업기간에 건설되거나 설치되는 내륙화물기지 시설 및 운영설비를 말한다.

32. 본 협약 : 본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3. 부대사업 :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투자비 보전 또는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4. 부속시설 : 본 사업의 운영 및 그 기능발휘에 필요한 보조기능시설(예,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35. 분기 : 해당년도의 1 월 1 일부터 3 월 31 일, 4 월 1 일부터 6 월 30 일, 7 월 1 일부터 9 월 30 일, 10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6. 사업계획서 :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상의 정부고시방식으로 2004 년 7 월 20 일 주무관청에 제출한 사업의 신청서류를 말한다.

37. 사업수익률 : 본 협약 체결 당시 결정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 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실질수익률(IRR)을 의미한다.

38. 사업시행자 :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정부로부터 본 사업의 사업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부여받은 (가칭)칠곡내륙화물기지 주식회사를 말한다.

39. 사업년도 : 사업기간 중의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운영개시년도의 경우에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당해연도 12 월 31 일까지를 말하고, 협약종료년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1 월 1 일부터 본 협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40. 사용료 : 사업시행자가 사용자로부터 본 사업시설을 사용한 대가로 징수하는 민간투자법상의 사용료를 의미한다.

41. 사용료수입 : 본 사업시설에 대한 사용료수입을 말한다.

42. 소비자물가지수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지표로서 통계청이 작성하여 공표하는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되고,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지수가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59조(분쟁의 해결) 내지 제61조(합의관할)에 의해 결정되는 바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가 산출된 것과 가장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대체된다.

43.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 가격산출기준일인 2004 년 3 월 22 일자 소비자물가지수를 100 으로 하고, 본 협약에 따라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징수하는 일자 또는 사용료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일자에 고시된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정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한다.

44.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5. 시설사업기본계획 : 건설교통부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가칭)칠곡내륙화물기지 주식회사의 사업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2004 년 3 월 22 일 공고(건설교통부고시 제 2004-59 호)한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말한다.

46. 실시계획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한 실시계획을 말한다.

47. 실시설계 :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충분한 사항들을 기재한 설계도면으로서 실시계획에 첨부된 도서 일체를 말한다.

48. 예비비 :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49. 외화 : 해당 시점의 원화를 제외한 대한민국 법령이 인정하는 모든 적법한 통화를 말한다.

50. 운영개시일 :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고 시설소유권을 취득하여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51.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본 협약 제 52 조(협약의 종료)에 의한 본 협약의 정상 종료일(중도해지의 경우를 제외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2. 운영설비 :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시설 및 화물이송설비를 말한다.

53. 원화 : 해당 시점의 대한민국의 적법한 통화를 말한다.

54. 위험물 : 고체, 액체 또는 기체와 같이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폭발물, 소음, 오염물질, 폐기물 기타 독성, 유해성, 가연성,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재산 또는 사람 기타 환경에 의하여 관리되는 유기체에 단독으로 또는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위해, 손해,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5. 유지관리 : 완공된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56. 인·허가 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부, 관계기관이 행하는 허가, 동의, 인가, 승인 등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57. 임대료수입 : 본 사업시설의 임대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되는 수입을 말한다.

58. 자금차입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 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59. 자금차입계약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본 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을 차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과 체결하는 각종 금융계약을 말한다.

60. 자기자금 : 사업시행자가 부록[3](자금투입계획)에 따라 본 사업에 투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61. 재무모델 : 별첨[1](재무모델)에 제시된 컴퓨터 프로그램 모델을 말한다.

62. 재정지원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제 53 조에 따라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금을 말한다.

63. 제반공급시설 : 본 사업구간에 병행하여 설치될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및 송유관 등 제반시설을 말한다.

64.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 22 조 제 1 항 각 호에 정의된 내용을 말한다.

65. 주무관청 : 본 사업의 추진주체 기관인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66. 준공일 :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제 32 조(준공확인 및 시설소유권의 등기)에 기재된 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준공확인필증에 기재된 준공년월일을 말한다.

67. 준공예정일 : 본 사업시설 공사의 예정 준공일로 정한 날로서 공사착수일로부터 27 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68. 준공확인필증 : 본 협약 제 32 조(준공확인 및 시설소유권의 등기)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69.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70. 지장물 : 본 사업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 등의 시행을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지상 또는 지하의 유형물을 말한다.

71. 총민간사업비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72.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에 본 시설의 준공을 위해 소요된 예비비와 건설기간 중 자금차입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73. 총사업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건설기간동안에 소요되는 건설관련비용의 총액으로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74. 총투자비 :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하여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총사업비와 예비비 및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75. 최초사용료 : 본 협약 제35조(사용료의 결정 및 정기적 조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사용료를 의미한다.

76. 추정물동량 :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률로서 본 협약 부록[4](추정물동량)에 명시된 운영률을 말한다.

77. 추정사용료수입 : 부록[6](추정사용료수입)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소유기간 중의 매 사업년도의 본 사업시설의 추정사용료수입액을 말한다.

78. 협약당사자 : 본 사업의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79. 회사채유통수익률 : 본 협약에 따른 이자기산일 직전 1 개월 동안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신용등급이 AA-이고 잔존만기가 3년인 공모 무보증회사채의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을 산술평균(소수점 3 자리에서 반올림한다)한 값을 말한다. 위 잔존만기 3 년인 신용등급 AA- 회사채의 기준수익률이 공표되지 않을 경우,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되고,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지수가 없을 경우에는 본 협약 제 59 조(분쟁의 해결) 내지 제 61 조(합의관할)에 의해 결정되는 바에 따라 회사채유통수익률이 산출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대체된다.

② 본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말하고, 본 협약 체결일 후 개정이 있는 경우 그의 개정 또는 그를 대체하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포함한다.

③ 감리자, 금융기관, 사업시행자, 사공자, 건설교통부장관 기타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의 적법한 포괄 또는 특정 승계인을 포함한다.

④ 본 협약에서 "등" 또는 "포함" 이라는 용어는 관련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⑤ 본 협약에 첨부된 부록들은 본 협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가칭) 칠곡내륙화물기지 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시설소유권을 설정, 부여한다.

제4조 (사업시행자의 자격과 권한 및 권리)

① 정부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권한, 또는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설계 및 건설할 권한

2. 제1호의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본 사업시설 건설예정지역내의 국·공유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다만, 사업시행자는 본사업과 관련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위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3. 제1호에 따라 건설된 본 사업시설을 민간투자법에 따라 소유하고, 본 사업시설 사용자로부터 합리적인 사용료를 징수하여 수익을 영위할 수 있으며 본 사업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

4. 본 협약 제39조(기타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따라 기타 경미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는 본 사업기간 동안 제 1 항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제한하거나 달리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시설소유권의 귀속 등)

① 민간투자법 제 2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부지 및 설치한 시설물은 민간투자법 제 4 조 제 4 호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② 본 협약 제 30 조(부분준공 및 준공전 사용)에 의한 본 사업시설의 부분준공 또는 준공전 사용으로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시설소유권 설정 전에라도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가능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분준공된 부분 또는 준공 전의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을 설정, 부여하고 화물유통촉진법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내륙화물기지 운영사업권을 부여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부분준공일 또는 준공전 사용일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준공전사용의 경우에도 같다. 다만, 본 사업시설의 부분준공 또는 준공전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은 재무 모델에 반영하여 제 35 조(사용료의결정 및 정기적 조정) 제 2 항에 의한 최초 사용료 산정에 반영, 정산한다.

제6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금융계약의 체결을 포함한 자금조달,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 및 기타 본 협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을 부담한다.

제7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인 (가칭) 칠곡내륙화물기지 주식회사의 주주구성 및 그 지분율은 부록[1](사업시행자 출자지분)과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중 전체 출자지분 중 5%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코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그러한 승인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되거나 지체되어서는 아니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고,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사후 증빙자료와 함께 즉시 통지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2인 이상의 출자자들이 합병하게 됨으로써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상장 또는 등록함으로써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3. 금융기관이 사업시행자의 주식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의 전부나 일부를 실행함으로써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중 전체 출자지분 중 5%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이후의 5% 미만의 출자지분 을 가진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가입)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제3자에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정부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조건은 동종 보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외 보험의 조건(부보 가능한 불가항력사유 등을 포함함)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본 협약의 부록[9](보험료)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업무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민간투자법 및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업무)

사업시행자는 부지의 매입에 따른 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 등 보상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보상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보상업무를 지원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본 협약 제20조(공사기간)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등 공사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2.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의 승인
3. 시급을 요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
4. 기타 본 협약으로 위임이 결정되었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약의 성실이행)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와 정부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13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본 사업시설의 총사업비는 부록[2](총사업비)와 같이 2004 년 3 월 22 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136,032 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이는 총민간사업비와 같다.

제14조 (총사업비의 변경)

①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 22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외 이 협약상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에 의한 총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정부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계획변경, 그외 정부의 요구에 의한 공법, 시설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의 증감 또는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3. 공사관련 법령(표준시방서, 정부제정 설계기준 및 지침 등을 포함한다.)의 제·개정으로 인한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의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본 사업시설 추진과 관련된 사업민원(시공민원은 제외), 인·허가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기관 요구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 또는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5. 법령(민간투자법, 조세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다)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6. 불가항력,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7. 감리계약을 위한 입찰 또는 공사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감리비가 증감되는 경우

② 제 1 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 제 7 호의 경우에는 증감분 전액을, 제 6 호의 경우에는 제 49 조(불가항력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에서 정한 부분을, 협약상 허용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그 지급방법은 정부의 재정융자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의 조정 등을 병행검토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 1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 산출근거를 공인회계사 등 전문기관의 확인(다만, 공사기간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 서류를 접수 후 1 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대한 설계기준 및 공법 변경은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한다. 단,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위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⑤ 본 사업시설 부지에 인접한 본 사업시설 인입도로 경계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요구가 있거나 향후 시설확장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매수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지출이 예상되어 사업성의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본 사업부지 매수시 건설교통부장관은 위 토지보상액 상당에 대하여 재정융자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 및 정부의 요구 등 정부의 행위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최초사용료 산정시 반영하기로 한다.

제15조 (자기자본 투입)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3](연도별 자금투입계획)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총민간투자비의 2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제 4 장 실시절차 및 공사에 관한 사항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수립에 착수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동 기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함)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선행 행정절차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동 지연기간은 승인신청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그 승인, 추가자료 제출 또는 보완요구, 또는 승인거절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 16 조에 규정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14 조에 의한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2. 교통 · 환경 · 재해 등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후 1 개월 이내에 금융기관과 체결한 자금차입계약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이행보증)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건설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보유중인 국공채,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이하 '보증금 등'이라 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준공일 이전에 정부가 본 협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사업시행자가 이행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정부가 보험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 귀책 이외의 사유로 준공일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보증금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준공일까지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지 아니하고 본 사업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된 경우 정부는 준공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보증금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한다.

제18조 (공사감리)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 28 조에 의한 유자격 감리회사를 감리자로 선정하여 책임감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 1 항에 의한 책임감리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선정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감리후보자는 본 사업시설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업무에 참여한 자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공사의 도급)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시공자를 정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에 의한 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자 선정 후 즉시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약방법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본 사업시설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이하 "하수급인"라 한다)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의 하도급조건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소재지의 지역업체의 우선선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④ 감리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1 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2 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공자 등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의 시공과정에서 노임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불노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 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⑦ 정부는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계약, 공사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20조 (공사기간)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27 개월로 한다.

② 제14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8조(정부 귀책 또는 부당 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또는 제49조(불가항력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제21조 (공사의 착수)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으로 정한 공사일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정부는 실시계획 승인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공사착수일을 지정·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의 발생, 용지보상의 지연, 공사착수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본 협약의 제14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공사착수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착수일을 조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일 7일 이전에 착공계를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정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제시된 바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실하게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감리자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추진현황을 보고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년 1월말까지 본 사업시설의 전체 공정 및 전년도 시공분이 표시된 설계도서, 당해 사업년도의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험물의 발견)

① 공사기간 중 본 협약체결 당시 협약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정부에 통지하고 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중화 등과 관련된 인·허가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나 관계기관이

행하는 본 사업부지에 대한 출입, 시설의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관계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등으로 인한 관련사항 및 처리비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위험물의 발견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시행자의 합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설의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위험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공사기간 지연 등의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하며, 제 49 조(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제 3 항 내지 제 5 항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4조 (지상 및 지하지장물)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해당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 및 지하 시설물을 가능한 한 모두 조사 확인하고 이의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 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조사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지장물이 실시계획 승인 후 발견된 경우 이의 이설 내지 추가공사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비용이나 공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 49 조(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제 3 항 내지 제 5 항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5조 (문화재의 발견)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문화재를 파손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에 문화재 발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문화재가 발견된 원래의 상태대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문화재발견 사실 통지 이후 20 일 이내에 동 문화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하여야 할 추가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 발굴은 정부 및 관계기관의 감독 및 참여하에 수행되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 및 처리비용은 문화재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④ 협약당사자는 문화재의 보존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공사기간 지연 등와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하며, 제 49 조(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제 3 항 내지 제 5 항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6조 (환경 및 안전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사업계획서 및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제반책임은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정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포함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7조 (민원처리)

①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민원의 경우는 제 14 조(총사업비의 변경) 제 1 항 제 4 호에 의하여 해결하되, 정부는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시공민원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한다.

③ 위 각 항에서 규정한 민원의 해결이 지연되거나 위의 각 항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동 민원의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동 민원해소에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사용료 및 총사업비의 변경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주장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제 3 자의 민원 또는 청구를 수령한 경우, 성실한 자세로 이 청구 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하며,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민원해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28조 (사업이행지체)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기간 포함)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계획으로 정한 공사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확인을 신청한 날까지 1 일당 지체상금으로 총사업비에서 항목별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43 조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으로 정한 공사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체상금 누적액이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하고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기타 민간투자법령 등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9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실적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리자로 하여금 기성검사 완료 후 7 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 (부분준공 및 준공전 사용)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본 사업시설 전체의 준공전이라도 일부시설에 대한 준공이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일부에 대한 준공 확인 및 소유권을 등기하고, 사업시행자는 부분준공된 사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협약당사자는 일부시설의 부분준공으로 인하여 나머지 시설의 준공이 예정일보다 지연되는 경우 1 년 이내에서 준공예정일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부분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 32 조(준공확인 및 시설소유권의 등기)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분준공에 대한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분준공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부분 준공된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을 등기하고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시설 운영을 허용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준공전 사용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준공 전 사용인가를 할 수 있다.

제31조 (정부지원시설의 적기 준공 및 운영관리)

①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부록[10](정부지원사항 및 시설공사)에 명시된 정부지원시설을 적기에 착공하여 공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까지 정부지원시설을 준공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부분 준공하거나 조기 준공하여 본 사업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실시계획에 따른 준공예정일 이전에 운영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시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본사업과 관련된 기간시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③ 정부지원시설중 본 사업시설부지내 인입철도(이하"인입철도")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1. 인입철도의 하부시설인 기초토목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하고, 위 철도의 상부시설인 선로, 전력, 신호, 통신 등의 시설공사는 정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2. 선로관리사무소는 본 사업부지 외에 정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한다.
3. 본 사업시설부지내에 철도인입선이 점유하게 되는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정부에 무상으로 임대한다.
4. 인입철도시설의 유지, 보수, 운영, 관리업무는 정부 또는 정부가 위탁하는 제3의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5. 인입철도의 유지관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 정부, 제3의 전문기관간의 상호협의로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위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담분은 본 사업시설의 사용료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32조 (준공확인 및 시설소유권의 등기)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준공예정일 3 개월 전까지 감리자가 작성한 예비준공검사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 기간 중에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비준공검사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미비 사항을 완결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민간투자법시행령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자가 확인한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준공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준공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확인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지 못하거나 준공확인필증 교부 전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 30 조(부분준공 및 준공전 사용)의 규정에 의한 준공전 사용인가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 20 조(공사기간) 제 1 항에 규정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는 경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지 못하거나 준공확인필증 교부 이전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30 조(부분준공 및 준공전 사용)의 규정에 의한 준공전사용인가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필증(조기준공을 포함한다)을 교부받은 후 즉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운영개시일 이전에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설소유권의 등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 4 항 규정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건설지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5 장 수익률 및 사용료

제33조 (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후 실질사업수익률 5.82%(세전 실질사업수익률 6.62%)로 하고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34조 (사용료의 징수)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회계법인이 작성한다.

제35조 (사용료의 결정 및 정기적 조정)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 사업년도에 적용할 년도별 기준사용료는 2004 년 3 월 22 일 불변가격기준으로, 부록[5] (사용료)와 같다.

② 운영개시년도에 적용할 최초 사용료는 제 1 항에 의한 기준사용료에 소비자물가상승율을 반영하고 그외 불가항력 사유, 정부의 귀책 또는 부당사유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제 30 조(부분준공 및 준공전 사용)의 부분준공으로 인한 추가수입 등을 정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연 1 회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매 사업년도의 정기적인 사용료 조정은 4 월 1 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운영개시년도 이후의 각 사업년도에 적용할 사용료는 전년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범위에서 매년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용료 적용기준일 1 개월 이전까지 사용료의 종류, 요율 및 징수기준 등을 그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은 매 사업연도 단위로 산정하여 반영하되 1 년 미만인 기간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36조 (사용료의 부정기적 조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 35 조(사용료의 결정 및 정기적 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료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사유, 정부의 귀책 또는 부당사유,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협약당사자가 사용료의 조정방법으로 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경우

2.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와 합의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가 제 1 항에 의해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 그 입증자료 및 본 협약 제 35 조 (사용료의결정 및 정기적 조정) 제 4 항의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협약당사자는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사용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 협의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의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제 3 의 전문기관에 사용료 산정을 의뢰하고, 협약당사자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료 산정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의뢰받은 날로부터 가능한 한 30 일 이내에 산정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 협약당사자는 전문기관이 산정한 결과를 이의없이 인정하기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용료 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영업전략 등의 목적으로 제 2 항 또는 본 협약 제 35 조(사용료의 결정 및 정기적 조정) 제 4 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용료를 인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 (추정물동량 및 추정사용료수입)

본 협약에서 사용되는 본 사업시설의 추정물동량 및 추정사용료 수입은 부록[4](추정물동량)에 제시된 연도별 운영율 및 부록[6](추정사용료수입)에 제시된 2004 년 3 월 22 일 불변가격기준의 추정사용료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제 6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 (운영비용)

① 본 협약 체결 당시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용은 2004 년 3 월 22 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금 139,554 백만원으로서 민간투자법령 및 본 협약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며,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부록[7](운영비용)과 같다.

② 운영기간중 각 사업년도의 경상가격기준 운영비용은 제 1 항의 운영비용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경영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문별 운영비용을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법인세율 등 기타 세제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감하는 경우 사용료의 조정 등을 통하여 반영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 3 항에서 규정한 사유의 발생을 근거로 부록[7](운영비용)에 규정된 운영비용을 변경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사용료의 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

제39조 (기타 경미한 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는 하늘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여 민간투자법 제 14 조 제 4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타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처리는 협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40조 (유지관리 및 품질확보)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본 사업시설 및 부속시설로 인하여 시설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이 최대한 도모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운영개시일의 3 개월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 5 년 말 1 개월 전까지 다음 5 개년도의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 는 사업시행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 3 자와의 협약을 통해 동 유지·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고, 제 3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계약의 주요 조건 등을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유지보수·관리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긴급유지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수, 개량, 개축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소유기간 중 위험을 발생시킬 하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험요인을 치유할 수 있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하자의 보수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이행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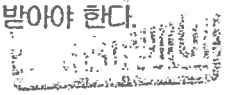

제41조 (관리 및 운영 등의 관련계약)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 관리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 대행하게 하는 등 운영, 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운영, 관리업무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 선정 후 즉시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 관리업무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와 운영, 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약조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수탁자 또는 계약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 상 부과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제42조 (운영실적보고)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3 월말까지 직전 사업년도의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부대사업, 기타 경미한 사업, 본 사업시설의 운영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에 의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물동량은 3 년 단위로 조사하여 보고하되,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를 수행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43조(입주자 선정)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임차인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임차인이 영위업종의 계열화 또는 분업화를 위해 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2. 임차인이 시설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간(6 개월)에 걸쳐 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임대면적은 시설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제 3 자물류업체에게 물류활동을 일괄 위탁하는 경우

② 위의 각 호의 경우 본 사업시설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의해 납부하는 사용료를 초과하여 전차인에게 전차임을 징수할 수 없다.

제 7 장 정부지원

제44조 (정부의 재정지원)

① 정부는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경우 장기대부금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부지의 취득에 필요한 보상비 전액을 정부의 재정에서 융자한다.

③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위 제2항의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총민간사업비의 40%를 정부의 재정에서 융자하며, 이 경우 총민간사업비에 대한 물가상승분도 정부의 재정융자대상(건설이자 불포함)에 포함된다.

④ 재정융자는 실시계획 승인시의 연도별 사업계획을 근거로 하여 매년도 융자금을 정한다.

⑤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재정지원금을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예산이 삭감 또는 조정되어 그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사용료 조정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제45조 (비 재정적 정부지원)

①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 기타 사업시행자 귀책이 아닌 사업지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 제20조(공사기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본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계관청에 대한 제반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필요한 경우 본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통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해외기자재 및 장비의 수입 등과 관련한 현금차관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도입조건(원금,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의미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당시설 및 현금차관의 도입에 필요한 수입허가절차, 인·허가절차 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⑥ 정부는 사업시행자와 금융기관간의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차입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제 8 장 위험분담

제46조 (위험배분원칙)

①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험은 사업시행자 귀책에 의한 위험, 정부귀책 또는 부당사유에 의한 위험,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위험으로 구분한다.

②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위험은 1 차적으로 관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협약 제 49 조(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에 의하기로 한다.

③ 제 2 항에 따라 협약당사자간 해당 위험의 유형과 성격규명 및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발생사유가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지배범위에 근접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47조 (사업시행자 귀책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보되, 이들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위반한 경우

2. 민간투자법 제 46 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에서 규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제 16 조(실시계획의 승인)에서 정한 기한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 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준공예정일까지 본 사업시설의 준공에 이르지 못한 경우

6.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안전관리, 시설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8. 사업시행자가 해산 및 청산한 경우. 다만, 합병으로 인한 해산 및 사업시행자의 본 협약에 따른 적법한 해지권 행사 이후의 해산결정은 제외한다.

②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또는 중단, 총사업비 및 운영비 증가, 사용료 수입 등 운영수입의 감소, 기타 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48조 (정부의 귀책 또는 부담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정부의 귀책 또는 부담사유로 보되, 이들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의 요구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 지연 등 사업추진이 중단 또는 지연되거나, 공사물량의 증가 또는 신규비목의 발생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2.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본 사업시설 또는 본 사업시행권에 대한 징발, 몰수 또는 국유화 조치가 있는 경우

3. 정부의 요구나 방침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조정, 결정된 사용료보다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

4. 본 사업과 관련된 실시계획의 승인, 인·허가 처리절차의 지연 등 본 협약에 정한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② 정부귀책 또는 부담사유로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증가 등 사업시행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되, 이와 병행하여 협약당사자는 사용료 조정으로 해당사유의 해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협약당사자들이 인정하여 합의하는 경우 사용료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정부귀책 또는 부담사유로 본 사업의 추진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사유를 치유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2. 운영기간 중인 경우 정부는 해당 사유로 인한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협약당사자는 사용료 조정으로 해당 사유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병행하여 검토하기로 하며, 협약당사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49조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①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되, 이들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민간투자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되, 이들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지진, 홍수, 해일, 태풍,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천재지변

2. 전국적 또는 산업전반의 노동쟁의

3. 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의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예측할 수 없는 위험물, 지장물 또는 문화재의 발견,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또는 화재, 방사능 또는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 중단되거나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

③ 불가항력사유로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의 증가, 기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보험으로 해소하되 보험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건설기간 중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해당 사유의 치유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2.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중 보험처리가 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정부가 전액 재정융자를 할 수 있다.

⑤ 운영기간 중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복구 등과 관련하여 추가비용 또는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중 보험처리가 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정부가 전액 재정융자를 할 수 있다.

제50조 (불가항력의 발생통지 및 이의제기)

①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을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후 48 시간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 1 항에 따라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통지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제 1 항에 의한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불가항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책임에 대한 예비적 평가내용, 가능한 치유방안 등을 서면통지 (불가항력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하여야 한다.

③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협약당사자가 통지된 불가항력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불가항력사유 발생에 대한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8 일 이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이의제기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 2 회 이상에 걸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협약당사자가 제 3 항의 기간 이내에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한 이의를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이 통지한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⑤ 불가항력 이의제기의 통지가 통지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철회되지 않을 경우, 동 분쟁은 제 59 조(분쟁의 해결)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다.

제51조 (불가항력 발생 시의 조치)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불가항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완화 또는 치유조치를 취함에 있어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 본 협약에 따라 협약당사자간 위험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③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분쟁은 제 59 조(분쟁의 해결)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다.

제 9 장 협약의 종료

제52조 (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제53조(중도해지에 따른 협약의 종료)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거나 운영개시일로부터 30 년이 만료되는 날 종료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협약 당사자의 본 협약상의 권리, 의무는 종료되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본 사업시설을 소유,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53조 (중도해지에 따른 협약의 종료)

본 협약은 제52조 제1항에 의한 협약의 정상종료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협약해지에 앞서 위험의 치유 및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정부의 협약 해지
2. 정부귀책 또는 부담사유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협약 해지
3.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협약의 종료
4. 협약당사자 상호협의에 의한 협약의 종료

제54조 (정부에 의한 중도해지)

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이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협약의 중도해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자격의 박탈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 1 항에 의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4 개월 이상 부여한다. 단, 제 47 조(사업시행자 귀책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 제 1 항 제 7 호, 제 8 호에 한해서는 그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55조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①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귀책 또는 부담사유로 본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협약의 해지를 서면 통지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 1 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4 개월 이상 부여한다. 단, 제 48 조(정부귀책 또는 부담사유에 의한 위험 및 그 처리)의 제 1 항 제 2 호에 한해서는 그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56조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불가항력 사유를 치유 또는 개선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적절한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② 협약당사자는 제 3 항에 의한 협약해지의 통지 이전에 본 협약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의 치유방안,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본 협약의 종료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4 개월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 3 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다음 각호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협약상대방에 대하여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협약은 통지의 도달로써 종료된다.

1.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본 시설의 건설공사 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6 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단, 위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총사업비 및 운영비가 현저히 증가하여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제57조 (중도해지에 대한 이의 제기)

① 협약상대방으로부터 협약의 해지를 통지 받은 협약당사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협약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성실한 자세로 그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본 협약 제 59 조(분쟁의 해결)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제58조 (협약의 중도해지시의 효과)

① 제 54 조(정부에 의한 중도해지) 내지 제 56 조(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에 의하여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해지의 귀책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의 중도해지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법 제 4 조 제 3 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는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③ 제 54 조(정부에 의한 중도해지)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유를 치유할 것을 통지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내에 해당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부가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정부, 사업시행자는 대체자로 제안된 자와 지체없이 대체자의 선정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여 그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체자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정부는 추천된 자가 본 협약 상 예정된 본 사업의 설계, 공사, 운영 기타 유지보수를 지속할 수 있는 자격과 자금조달 또는 기술능력을 갖고 있음이 합리적으로 확인한 후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체자가 본

사업의 시행권을 인수할 가격은 본 사업시설의 적정가치 등을 고려하여 위 당사자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 10 장 분쟁의 해결

제59조 (분쟁의 해결)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을 신의성실 원칙 하에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협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 본 협약에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당사자가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본 협약 제 60 조(중재)에 의한 중재에 의하거나,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한다.

제60조 (중 재)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협약당사자가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한상사중재규칙에 따른다.

②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대한상사중재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르며, 협약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증거나 분쟁사유를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다.

③ 중재비용은 중재판정으로 결정한다. 중재판정은 신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 최종 중재인 선임일 이후 3 개월 경과시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단, 협약당사자가 상호 약정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④ 중재인의 판정은 항소, 상고, 항고 등 그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으며, 협약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협약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61조 (합의관할)

협약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성질상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1 장 비밀 유지 등 기타사항

제62조 (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 그리고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이후 3 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 1 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본 협약에 따른 시공자 및 하수급인에 대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정보의 공개

3.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정보로서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4. 법령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5.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상의 필요에 따른 정보의 공개

6.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기관,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63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정부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되, 본 협약 내용 중 정부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상이한 사항은 본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4조 (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금융자금의 조달목적 기타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의 변경 이후에도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보장된 사업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 및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65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각 협약당사자와 사업시행자의 포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6조 (일부무효)

특정 관할 내 적용되는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내 적용되는 법률에서의 본 협약 상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7조 (적용법규)

① 본 협약 및 그에 따라 체결되거나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 및 서류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본 협약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투자법, 화물유통촉진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이들 법률에 부속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한다)과 민간투자기본계획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68조 (통지)

① 본 협약상의 통지 또는 최고는 다음에 게재된 연락처로 인편 또는 우편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각 협약당사자에 대한 문서의 통지나 송달은 아래의 주소로 이루어진다.

1. 정부에 대한 통지 : 건설교통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정부과천청사 4 동

참조 : 수송정책실 물류기획과장

전화 : 02-2110-8115~7

팩스 : 02-504-9087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 (가칭)칠곡내륙화물기지 주간사 한국인프라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4

참조 : 한국인프라개발 기획관리팀

전화 : 02-3424-1800

팩스 : 02-3424-1801

③ 협약당사자는 위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통지는 통지의 접수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④ 본 협약상의 통지는 우편인 경우 직접 당해 주소에 전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발송이 확인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69조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정부협조)

①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금융기관과 본 사업 시행자간에 체결된 자금차입 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② 정부는 금융기관이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의 시설소유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금융기관과의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금차입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등으로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 전에 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그 자금차입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체결 이후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는 경우 자금재조달 신청시의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70조 (정부의 협약준수 의무)

정부는 본 협약이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함과 아울러 본 협약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또한, 정부는 본 협약과 관련한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치행위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제71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부록, 별첨 및 기타 본 협약의 일부로 간주되는 서류 포함)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당사자간의 기타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제72조 (완전합의)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들은 협약 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 협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협약당사자간의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제73조 (언어)

본 협약은 한글 본으로 작성되며 차관도입 등 외자조달 필요성에 의해 영문본을 작성할 경우 해석상 한글본이 영문본에 우선한다.

제74조 (문서의 우선순위)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시행령
3. 본 협약
4. 시설사업기본계획
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5조 (해석)

① 본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포함한다.

②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본 협약 상의 표제 또는 제목은 참고 및 편의를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서 본문을 해석할 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⑤ 협약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대체인, 양수인을 포함한다.

제76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77조 (경과조치)

관계법규 및 정부의 행정입법 등 제반행정조치가 본 사업완료 이전에 사업시행자를 위하여 개정되는 경우,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법령 및 행정조치가 본 사업에 반영되도록 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5년 월 일

대 한 민 국 (가칭)칠곡내륙화물기지 주식회사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 주간사 한국인프라개발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김 석